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84
----------	-----

2020. 12. 16.(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나. 발의일자: 2020년 11월 17일

다. 회부일자: 2020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2020년 11월 26일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학생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4조)
-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안 제6조~제8조)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안 제9조)
- 민주학교 선정·운영(안 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하면서 선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민주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적 삶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교육대상 확대 및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할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 공화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하며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방안
4. 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학생 및 학부모자치 활성화 방안
6. 학교민주시민교육 재원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연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토론,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실천
2.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 방식
3. 선거제도, 선거법, 선거 및 투표의 의미와 기능 등 선거 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10조(민주학교 선정·운영) 교육감은 민주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① ~ ③ (생략)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 2. (생략)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 3. (생략)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14조(교원) ① ~ ③ (생략)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⑥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민주학교 선정·운영) 교육감은 민주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제4항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